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9. 2.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8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198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9월 2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 가. 제안이유

우리구 홍대주변 주차 수요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 방지와 대중교통을 유도하고 주변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을 고려, 이용요금 조정을 위한 급지 조정과 법적 위임 없는 과도한 규제정비 및 전통시장 주차요금 할인 조건을 구체화하여 요금 관련 민원 불편사항을 방지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홍대주변 주차장 6개소 급지 조정 (별지 1호 : 2급지 → 1급지)
- 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조항(제2조의2) 삭제
- 3) [별표1] 주차요금표 중 노상주차장 1일주차권(야간에 한함) 삭제
- 4)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요금 할인 규정 명확화
- 5)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송인수)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관광명소인 홍대지역의 내·외국인 방문객의 꾸준한 유입으로 인한, 홍대주변 주차 수요급증에 따른 극심한 교통 혼잡 방지와 대중교통을 유도하고 주변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을 고려, 이용요금 조정을 위한 금지 조정과 법적 위임 없는 과도한 규제정비 및 전통 시장 주차요금 할인 조건을 구체화하여 요금 관련 민원 불편 사항을 방지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제①항의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가의 1금지 구역 변경(6개소: 2금지 → 1금지) 및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노상주차장 1일 주차권(야간에 한함)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의 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규정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차지법규 정비’와 관련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정비 추진 계획에 의거 삭제 하였으며,

[별표 1]의 비고란 제15호의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요금 할인 조건을 당일에 한하도록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방지하였으며 (주차확인증 제출 시 → 주차 당일 확인증 제출 시)

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조례개정 후 금지조정(2금지→1금지)으로 인한 주차장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